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를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6. ~ 11. 15., 11. 24. ~ 11. 30.) 결

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신고하여야”를 각각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 기간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간주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제29조의2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u>신고하 여야</u>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u>신고하여야</u>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 ----- ----- ----- <u>신고해 야</u> ----- . ----- ----- <u>신고해야</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른 <u>우선지원 대상기업</u> 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6. ----- ----- <u>우선지원 대상기업</u>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라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 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 ----- -----.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생 략)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 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	나. ----- ----- <u>우선지원 대상기업</u> ----- -----

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라.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
 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
 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
 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
 도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율을 적용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간주 기간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간주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
 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

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
·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
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
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
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 3. (생략)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
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
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후단 신설>

③ ~ ⑤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
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
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73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연 락 처	(044) 202 - 7350